

##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

전순환\*

### 요약

전자상거래 관련입법으로서, 미국에는 2개의 통일주법과 1개의 연방법이 있는데, 통일주법으로서는 통일주법전국위원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에 의한 1999년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과 2000년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의 최종안이 승인되었고, 연방법으로서는 2000년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법(The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E-Sign Act; 연방전자서명법)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본고는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대한 목적, 특징 및 주요내용을 고찰한다.

### I.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급증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부터 OECD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쟁점을 논의해 오고, 1996년과 1997년에는 UNCITRAL에 의해서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규칙 초안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러한 논의 또는 입법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이나 전자서명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미국, EU, 일본 등도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거나 입법지침으로 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재 아주 독자의 것이 아닌 전자상거래 관련입법으로서, 2개의 통일주법과 1개의 연방법이 있다. 통일주법으로서는 통일주법

전국위원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가 전자거래에 관한 주법(State Law)의 모델법인 1999년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과 2000년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의 최종안을 승인하였다. 연방법으로서는 2000년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법(The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E-Sign Act; 연방전자서명법)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Utah Digital Signature Act)을 비롯하여,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등의 많은 주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독자적인 주법을 제정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거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대하여 그 목적과 제정과정, 특징 및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통일전자거래

\* 중부대학교 경상학부 조교수

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 II. 통일전자거래법의 목적과 구성

### 2.1 UETA의 제정과정

통일전자거래법(UETA)은 1999년 7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개최된 통일주법전국위원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sup>1)</sup>의 연차총회에 의해서 승인되고, 공표되었다.

UETA의 초안마련을 위한 진행과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최초의 초안형태로 파악되는 것이 1997년 4월 10일자 초안이므로 그 이전부터 초안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1997년 4월 10일자 초안에서는 법명칭이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tractual Transactions Act"(ECCT)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해 리포터 Benjamin Beard가 작성한 메모를 보면 초안작성의 주체가 "Drafting Committee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tractual Transactions"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초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종의 모델조항(model provisions)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러나 1997년 8월 15일자 초안(1차 초안)부

터는 법명칭이 현재와 같이 통일전자거래법(UETA)으로 변경되고, 그 작업주체도 통일주법전국위원회(NCCUSL)로 변경되어 8차의 최종안이 승인되게 된 것이다.

〈표 1〉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의 제정과정<sup>3)</sup>

초안	시기	조문
1차 초안	1997. 8. 15.	6개 장(Part), 30개 조문(Section)
2차 초안	1997. 11. 25.	6개 장 29개 조문
3차 초안	1998. 3. 23.	6개 장 30개 조문
4차 초안	1998. 7. 24.	6개 장 31개 조문
5차 초안	1998. 9. 18.	6개 장 32개 조문
6차 초안	1999. 1. 29.	3개 장, 24개 조문
7차 초안	1999. 3. 19.	
8차 초안	1999. 7. 23.	21개 조문(장구분 없음)

이미 많은 주가 디지털서명 등에 관해서 독자의 입법을 행하고 있지만, UETA는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주법을 준비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노력의 성과로서, 전자상거래를 지배하는 각주 공통의 통일적인 규칙을 제공하고자 하고, 미국의 전국적인 노력을 대표하는 입법이다. UETA는 이미 33개 주에서 입법화되었으며, 2001년에 여러 주의회에 의해서 입법화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이와 같이 보급의 속도가 빠른 것은 미국에 있어서 전자기록·서명에 관

3) 이 표는 통일전자거래법(UETA)의 명칭으로 초안된 때부터 작성된 것으로서, UETA의 제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law.upenn.edu/bll/uec\\_frame.htm](http://www.law.upenn.edu/bll/uec_frame.htm).

4) 입법화된 주는 Alabam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Delaware, Florida, Hawaii, Idaho,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ontana, Nebraska, New Mexico,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Dakota, Tennessee, Utah, Virginia, West Virginia, Wyoming 등이며, 2001년 중에 입법화가 예상되는 주는 Colorado, Connecticut, District of Columbia, Illinois, Massachusetts, Missouri,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Oregon, Texas, Vermont, Wisconsin 등의 12개 주와 1개 특별구이었다.

1) NCCUSL은 약 100년전에 각 주에 적용될 통일법이나 모델법을 제시하고, 각 주로 하여금 통일법을 주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각 주에서 임명된 300명 이상의 변호사, 판사 및 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http://www.nccusl.org>.

2) 오병철,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1999년 3월 19일 조인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8집, 국제거래법학회, 1999, p.196: <http://nongae.gsu.ac.kr/~windoh/mywork/국제거래법학회발표논문.htm>

한 통일주법으로의 기대가 컸다는 것을 지적한 것일 것이다.<sup>5)</sup>

## 2.2 UETA의 목적

UETA의 규칙은 주로 통일상법전 제2편(매매편)과 제2A편(리스편)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래에 관한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위한 규칙이다. 여기에서 “거래(transaction)”란, “거래”라 함은 사업, 상업 또는 정부에 관련되는 사항의 운영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간에 발생하는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 정의에서는 법원이나 정부기관에 의한 법률에서 요구되어 있는 통지, 개시 또는 전달을 포함하는 많은 사항이 제외되는 것으로 된다.<sup>6)</sup>

UETA의 주된 목적은 전자적인 기록과 서명을 종이의 문서 및 수기서명과 법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확립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즉, UETA가 추구하는 목적과 정책은 다음과 같다.<sup>7)</sup> 첫째,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사용을 유효하게 승인함으로써 상거래와 정부거래를 장려·촉진하고, 둘째, 서면 및 서명요건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및 정부거래의 장애를 제거하고, 셋째, 전자적인 수단의 사용을 통하여 상거래 및 정부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을 단순화·명확화·현대화하고, 넷째, 관습, 관행 및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여 상거래 및 정부의 전자관행의 지속적인 확대를 허용하고, 다섯째, 상거래 및 정부거래를 유효하게 수행하게 하는 전자 및 이와 유

사한 기술수단의 사용에 관하여 각 주간에(나아가 전세계적으로) 법률의 통일을 촉진하고, 여섯째, 전자상거래 및 정부거래의 유효성, 무결성 및 신뢰성에 있어서 공공의 신뢰를 중대하고, 일곱째, 전자상거래 및 정부거래의 실행에 필요한 법적 및 경영적 기반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 2.3 UETA의 특징

UETA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UETA는 전자상거래의 전혀 새로운 법규범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UCC의 관련조항을 적절히 조화시켜 만든 입법이다. UETA는 전자서류나 전자서명이 실거래의 대체관계에 있는 서면이나 수기서명과 많은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차법이다. 즉 UETA의 최소한의 목적은 어떠한 거래에서도 전자기록은 서면기록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어떠한 형태의 전자서명도 수기서명과 동일한 법적효과를 누린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동법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존의 미국계약법을 수정한 것이다. 동법이 단지 21개의 조문으로 단순하게 구성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된다.<sup>8)</sup>

둘째, UETA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UETA는 제2조에서 합의(Agreement), 자동화거래(Automated transaction),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 계약(Contract), 전자적(Electronic), 전자대리인(Electronic agent),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정부기관(Government

5) NCCUSL, A Few Facts About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http://www.nccusl.uniformactfactsheets/uniformacts-fs-ueta.asp>.

6) NCCUSL, Summary,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http://www.nccusl/uniformact\\_summaries/uniformacts-s-ueta.asp](http://www.nccusl/uniformact_summaries/uniformacts-s-ueta.asp).

7) UETA 제6조 Comment No.2.

8) 손태우,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최종안의 내용과 의의, 인터넷법률 3호, 2000.11, p.4.

mental agency), 정보(Information), 정보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개인(Person), 기록(Record), 보안절차(Security procedure), 주(State), 거래(Transaction)와 같이 16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세한 개념정의 규정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법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세째, UETA는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으로 나누어 규정하되, 정부부문의 전자기록에 관해서는 전자거래와 무관하게 정부기록의 보존을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UETA는 UNCITRAL 모델법의 골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을 “상거래(commerce)”가 아닌 보다 넓은 “거래(transaction)”로 하고 있으며, 전자기록의 변화 발생이나 오류의 효과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양도성있는 문서”에 관한 조항을 두어 전자화된 어음(note)에 대해서도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이나 우리 전자거래기본법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 2.4 법률의 구성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은 다음과 같이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문	국문
Section 1. Short Title	제1조 법명
Section 2. Definitions	제2조 정의
Section 3. Scope	제3조 적용범위
Section 4. Prospective Application	제4조 장래의 적용
Section 5. Use of Electronic Records and Electronic Signature: Variation by Agreement	제5조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사용: 합의에 의한 변경
Section 6.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제6조 해석과 적용
Section 7.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Contracts	제7조 전자기록,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의 법적 승인
Section 8. Provision of Information in Writing: Presentation of Records	제8조 서면에 의한 정보의 제공: 기록의 제시
Section 9. Attribution and Effect of Electronic Record and Electronic Signature	제9조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归属과 효과
Section 10. Effect of Change or Error	제10조 변경 또는 오류의 효과
Section 11. Notarization and Acknowledgement	제11조 공증과 확인
Section 12. Retention of Electronic Records: Originals	제12조 전자기록의 보존: 원본
Section 13. Admissibility in Evidence	제13조 증거로서의 허용성
Section 14. Automated Transaction	제14조 자동화거래
Section 15. Time and Place of Sending and Receipt	제15조 송·수신 시기와 장소
Section 16. Transferable Records	제16조 양도가능한 기록
Section 17. Creation and Retention of Electronic Records and Conversion of Written Records by Governmental Agencies	제17조 전자기록의 생성 및 보존 그리고 정부기관에 의한 서면기록의 전환
Section 18. Acceptanc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Records by Governmental Agencies	제18조 정부기관에 의한 전자기록의 승낙과 분배
Section 19. Interoperability	제19조 상호이행가능성
Section 20. Severability Clause	제20조 분리가능 조항
Section 21. Effective Date	제21조 발효일

9) 오병철, 전개논문.

### III. UETA의 주요내용

#### 3.1 적용범위

##### 3.1.1 적용대상

UETA 제3조 (a)항 및 (b)항에서는 “거래에 관련된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① 유언, 유언보충서, 또는 유언에 의한 신탁의 성립 및 집행을 규율하는 법, ② 제1-107조 및 제1-206조, 제2편 및 제2A편을 제외한 통일상법전, ③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④ 각주에서 정하는 기타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UETA는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그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sup>10)</sup> UETA는 거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여 전자거래의 효력을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언·유언보충서 및 유언에 의한 신탁에 관한 법률<sup>11)</sup>, 통일상법전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경우<sup>12)</sup>, 통일컴퓨터거래법, 각주에서

- 10) UETA 제2조 제16항에서는 “거래(transaction)”라 함은 사업, 상업 또는 정부에 관련되는 사항의 운영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간에 발생하는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UETA는 사업, 상업 또는 정부의 업무와 관련된 거래가 아닌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UETA는 사업, 상업 또는 정부의 업무와 관련된 거래로서, 그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11) UETA가 유언, 유언보충서, 또는 유언에 의한 신탁의 성립 및 집행을 규율하는 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동 기록은 UETA에서 정의하는 거래에는 거의 사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 12) UETA는 원칙적으로 거래에 관련된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일상법전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이루어진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에는 UETA가 적용되지 않고 통일상법전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UETA는 통일상법전 제4편의 적용을 받는 수표에

정하는 기타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래<sup>13)</sup>에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은 다양한 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은 이외의 다른 법률과 관련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어 유효하게 다루어진다.

UETA는 기존법률에서 요건으로 되어 있는 서면에 의한 기록이나 서명과 달리, 모든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

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표라는 전자기록이 사용된 경우, 소위 전자수표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통일상법전 제1-107조 및 제1-206조, 제2편 및 제2A편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이루어진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UETA가 적용된다.

통일상법전 제3편(negotiable instruments), 제4편(bank deposits and collections), 제4A편(funds transfers)이 제외된 것은 동 규정들은 대금지급과 관련되고, 그리하여 기본계약의 계약당사자 외에도 많은 당사자들이 관계되는 비, 전자적 매체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법적 결과(impact)를 다 고려하는 작업은 동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적용배제하였다. 또한 제5편(letters of credit), 제8편(investment securities) 및 제9편(secured transactions; sales of accounts and chattel paper)이 제외된 것은 각 편의 규정들은 개정 시에 이미 전자거래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안하였기 때문이다. 통일상법전 제1-107조 및 제1-206조, 제2편 및 제2A편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해 UETA가 적용되도록 한 것은 매매나 리스거래에 있어서는, 수표에 의한 금전지급이나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와는 달리,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의 당사자 이외의 자가 직접 관련되는 거래구조를 취하지 않으며, 또 매매나 리스는 보통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방위,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6권, 2001.8, p.337.

- 13) 주법에 의한 문서 및 서명의 요건증에는 거래의 강행가능성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있으며 UETA와 같은 법률의 채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UETA는 합의된 전자거래에 대하여 대부분 다른 문서요건과의 저촉을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UETA는 저촉을 회피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각 주에서 관광지역마다 어느 정도 기공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즉, 이것은 위에서 언급된 적용배제 이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각 주의 선택에 따라 UETA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주법이 특정 서면 및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거래의 기록이나 서명을 전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UETA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적용배제의 범위는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당시기간의 계약 및 거래에 관한 대부분의 법률이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인정하거나 또는 합의된 전자거래에만 UETA를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면, 다른 서면요구사항과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험지하게 될 것이다.

다. 이것은 기록이나 서명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록이나 서명을 담고 있는 매체(medium)에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차이는 법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UETA는 기존 법률에서 기록이나 서명의 내용뿐만 아니라 유언이나 수표의 발행과 같이 기록이나 서명이 포함된 매체의 형태까지도 법률요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즉 서면에 의한 문서에 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또는 통일컴퓨터 정보거래법과 같이 해당 법률이 전자기록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정된 경우 등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결국 UETA는 모든 거래와 관련된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적용의 명확성과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UETA 제3조 (c)항 및 (d)항에서는 “제3조 (b)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법에 의해 규율되는 한도에서 (b)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달리 배제되는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이 법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는 기타 적용 가능한 실체법을 조건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은 둘 이상의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둘 이상의 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UETA는 제3조 (b)항에 의하여 UETA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동조 (b)항에 의하여 UETA의 적용이 배제되는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UETA가 적용되는 거래에 다른 적용 가능한 실체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3.1.2 장래의 적용

UETA 제4조에서는 “이 법의 발효일이나 그 이후에 형성, 생성, 송신,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된 어떤 전자기록 또는 전자서명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1.3 해석과 적용

UETA 제6조에서는 “① 다른 준거법과 모순되지 않는 전자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② 전자기록과 관련된 합리적인 관행 및 그러한 관행의 지속적인 확대와 모순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③ 이 법을 제정하는 주들간에 이 법의 주제에 관하여 법을 일률적으로 만들기 위한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UETA는 전자거래를 유효하게 하자 하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안되었으며, 법정이 새로운 기술과 관행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3.2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사용

UETA는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UETA 제5조 (a)항에서는 “기록 또는 서명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형성, 생성, 송신, 통신, 수신, 저장되거나, 또는 달리 처리되거나 사용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UETA는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떠한 자도 거래를 반드시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다.

둘째, UETA 제5조 (b)항에서는 “전자적 수단으로 거래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당사자간의 거

래에만 적용된다.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으로 거래를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행위를 포함하여 전후 관계와 주위상황으로부터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UETA는 당사자가 거래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sup>14)</sup>는 필수적이다. 당사자간의 합의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를 포함하여 전후 관계와 주위상황에 기초한 합리성에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인정하는 임의규정으로서, 거래에 전자적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당사자의 자유에 맡김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전자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셋째, UETA 제5조 (c)항에서는 “전자적 수단으로 거래를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있는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으로 다른 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합의에 의해 포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것에 합의한 당사자는 UETA의 적용을 받지만,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 거래를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는 것이 합의된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UETA의 규정의 대부분을 변경하고,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UETA를 정하는 규칙은 거의 전부 계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위 Default Rule이다.<sup>15)</sup>

넷째, UETA 제5조 (d)항에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규정의 효력은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 법의 특별규정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의 존재는 다른 규정의 효력이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UETA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규정의 효력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UETA의 특별규정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나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의 존재는 어떠한 규정의 효력을 약정에 의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UETA 제5조 (e)항에서는 “전자기록 또는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이 법과 기타 준거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이 서면에 의한 기록과 서명으로서 가지는 실체법적 효력은 기존법률에 따르고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사용된 매체상의 어떤 기록이나 서명 또는 계약서의 유효성 문제와는 별개이다.<sup>16)</sup> 법에서 기록이 담아야 할 최소한의 실체적 내용을 정하는 경우, 그 기록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그 기록이 해당 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sup>17)</sup>

### 3.3 전자기록,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의 법적 승인

#### 3.3.1 전자기록,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의 법적 승인

UETA 제7조 (a) 및 (b)항에서는 “기록 또는

14) UETA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합의(agreement)”란 형은 사실상 당사자의 교섭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기타 상황으로부터 추론되고, 그리고 특정거래에 별도로 적용되는 법률하에서 합의의 효력이 부여되는 규칙, 규정 및 절차로부터 추론된다.

15) 新堀聰, 最新の美國における電子商取引關聯立法の研究, p.7.

16) 예를 들어, 제7조 (a)항과 (b)항은 당해 기록이나 서명 또는 계약서가 유효함을 설립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17) 한병원, 전개논문, p.340.

서명은 그것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나 강제집행력이 부인될 수 없으며, 계약은 그 성립에 있어서 전자기록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과 강제집행력이 부인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기존 실체법상의 기록, 서명 및 계약의 효력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효력부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효력부정을 금지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방법은 UNCITRAL 모델법 제5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전자거래기본법에서도 제5조에서 동일한 표현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취할 경우, 전자적이라는 이유 외에 기존의 법률에 따라 효력이나 강제집행력이 부정되어야 할 다른 이유를 근거로 한 효력부정도 불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부여하고자 하는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되게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8)</sup>

또한, UETA 제7조 (c) 및 (d)항에서는 “법이 서면에 의한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기록은 그 법을 충족시키며, 법이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서명은 그 법을 충족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이 각각 서면에 의한 기록과 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에서 서면이나 서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만 국한되며, 제3조 (b)항에 의하여 UETA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경우에는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이 서면에 의한 기록과 서명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18) 오병철, 전개논문

### 3.3.2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증거의 허용성

UETA 제13조에서는 “소송절차에서 기록이나 서명의 증거는 그것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UETA 제7조와 마찬가지로 기록이나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 3.4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귀속과 효력

UETA 제9조 (a)항에서는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은 그것이 어떤 당사자의 행위인 경우 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그 당사자의 행위는 그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이 귀속될 수 있었던 당사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 어떤 보안절차의 효능을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UETA는 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간의 비대면 거래(faceless transaction)에서 진정성(authenticity)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서명 및 전자서명이 어떤 자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법률효과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귀속된다. 귀속주체의 증명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사용된 보안절차<sup>19)</sup>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sup>20)</sup> 여

19) UETA 제2조 14호에서는 “보안절차란 힘은 전자서명, 기록, 또는 실행이 특정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목적으로 또는 전자기록상 정보의 변경이나 오류를 검색하기 위하여 채택한 절차를 말한다. 이 용어는 일고리즘이나 기타 코드, 식별을 위한 문자나 숫자, 암호화, 또는 딥신이나 기타 확인절차 등의 사용을 요구하는 절차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정병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의 일법 동향-미국의 일법활동을 중심으로: <http://altair.chonnam.ac.kr/~bubdae/professor/book/jungbst.htm>

기에서 행위자의 행위에는 전자대리인(electronic agent)의 행위도 포함되는 바, 전자대리인에 의해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이 행해진 경우, 그 기록이나 서명의 법률효과는 그 전자대리인을 작동시키거나 프로그램화한 자에게 귀속된다.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이 귀속되는 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안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보안절차는 특정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의 내용 또는 근원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UETA는 보안절차에 사용되어야 하는 어떤 특정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특정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이 특정인의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UETA 제9조 (b)항에서는 “(a)항에 의하여 어떤 당사자에게 귀속된 전자기록 또는 전자서명의 효력은,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것의 생성, 작성 또는 채용시의 환경과 주위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5 전자기록의 보존

UETA는 전자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UETA 제12조 (a)항에서는 “법에서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그 요건은 ① 전자기록 또는 기타로서 그 최종형태로 최초로 생성된 이후에 기록에서 규정된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고, ② 장래의 참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록에서의 정보의 전자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기록보존의 방법을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

확성과 지속적인 접근가능성이 요구된다. 즉, 서면으로 기록을 보존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관련기록이 최종형태의 전자기록으로 변형된 후에 기록상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 이후에도 정보에 접속가능한 상태로 두어야만 기록으로서 인정된다. 전자적으로 유효하게 저장된 기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록을 저장한 매체가 안정적이고, 시스템간의 호환이 가능하고, 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에 적합하게 되도록 갱신(update)되어야 한다.

둘째, UETA 제12조 (b)항 및 (c)항에서는 “(a)항에 따라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요건은 기록이 송신, 전송, 또는 수신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목적의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어떤 당사자는 (a)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그 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UETA 제12조 (d)항에서는 “법에서 기록이 원본의 형태로 제시 또는 보존되도록 요구하는 경우, 또는 기록이 원본의 형태로 제시 또는 보존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법은 (a)항에 따라 보존된 전자기록에 의해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기록의 원본성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자기록이 서면에 의한 문서의 원본으로서의 기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넷째, UETA 제12조 (e)항에서는 “법이 수표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a)항에 따라 수표의 전면과 이면상의 정보를 전자기록으로 보존함으로써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많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표보존법령(check retention statutes)과 관련해서 지금완료된 수표의 원본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 그 수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존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수표의 보존

을 요구하는 법률의 존재에 의해서 수표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그 수표의 보존은 반드시 서면의 형태로 된 수표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를 스캐닝하여 이미지파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섯째, UETA 제12조 (f)항에서는 “(a)항에 따라 전자기록으로 보존된 기록은 증거, 감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할 것을 어떠한 자에게 요구하는 법률을 충족시킨다. 다만, 이 법의 발효일 이후에 제정된 법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전자기록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기록으로 보존된 기록은 원본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금지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입증방법이나 감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 규정이다.

여섯째, UETA 제12조 (g)항에서는 “이 조는 이 주의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관의 관할권을 조건으로 기록의 보존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3.6 서면에 의한 정보의 제공

UETA는 서면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제7조가 서면요건을 다루었다면, 이 조는 “서면에 의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의 제공방식”的 요건을 다루고 있다.

첫째, UETA 제8조 (a)항에서는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으로 거래를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법이 어떤 당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 송신, 또는 인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요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보가 수신시에 수신자에 의해 보존될 수 있는 전자기록으로 제공, 송신, 또는 인도되는 경우 충족된다.

송신자 또는 그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전자기록을 인쇄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억제하는 경우 그 전자기록은 수신자에 의해 보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가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다른 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전자기록의 수신자는 전자기록을 받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 나중에 다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조는 전자기록이 나중의 검토를 위하여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21)</sup>

둘째, UETA 제8조 (b)항에서는 “이 법 이외의 법에서 기록이 (i) 특정방법으로 송달되거나 표시되고 (ii) 특정방법으로 송신, 통신, 또는 전송되거나 (iii) 특정방법으로 구성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① 기록은 다른 법에서 명시된 방법으로 송달되거나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 ② (d)항 (2)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은 그 다른 법에서 명시된 방법에 의하여 송신, 통신 또는 전송되어야 한다는 것, ③ 기록은 다른 법에서 명시된 방법으로 구성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UETA 제8조 (c)항에서는 “송신자가 전자기록을 저장 또는 인쇄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억제하는 경우 그 전자기록은 수신자에 대하여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UETA 제8조 (d)항에서는 “이 조의 요건은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 이외의 법이 정보가 서면으로 제공, 송신, 또는 인도되도록 요구하지만 그러한 요건이 합의에 의해 변경되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정보가 보존할 수 있는 전자기록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a)항에 의한 요건은 합의에 의해 변경될

21) UETA 제8조 Comment No.3.

수 있으며, 우편료 선금의 제1종우편, 정기미국우편으로 기록을 송신, 통신, 또는 전송하도록 하는 이 법이외의 법에 의한 요건은 다른 법에 의해 허용된 범위까지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7 변경 또는 오류의 효과

전자기록에서 변경 또는 오류가 거래당사자간의 전송에서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sup>22)</sup> 이 규정은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에서는 없는 것으로서, UETA가 전자기록의 변경이나 오류발생의 효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전자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오류에 의한 내용훼손의 문제를 법적으로 다룬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전자기록의 전송시나 자동화거래에서 발생하는 변경이나 오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첫째, UETA 제10조 (1)항에서는 “당사자가 변경 또는 오류를 감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한 당사자가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였지만 다른 당사자가 준수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준수한 경우 그 당사자가 그러한 변경 또는 오류를 감지하였다면, 준수당사자는 그 변경되거나 오류가 있는 전자기록의 효과를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변경이나 오류의 발생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것이 적용되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의의무위반(default)이라는 과실판단에 따라 책임있는 당사자가 변경이나 오류의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류검색절차의 준수유무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고, 오류검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변화와 오류에 따른

결과를 부인할 수 없도록 다루고 있다.<sup>23)</sup>

둘째, UETA 제10조 (2)항에서는 “개인과 관련한 자동화거래에서 개인은 전자대리인이 오류의 방지 또는 정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른 당사자의 전자대리인과의 거래에서 개인에 의해 행해진 오류로부터 발생한 전자기록의 효과를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그 오류를 알게 된 시점에서 개인은 ①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오류를, 그리고 개인이 다른 당사자에 의해 수신된 전자기록에 구속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고, ② 다른 당사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지시된 경우, 만일 있다면, 오류가 있는 전자기록의 결과로서 수신된 약인을 소멸시키기 위한 다른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시를 준수하는 조치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③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신된 약인으로부터 어떤 이익 또는 가치를 사용하거나 수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전자대리인을 다루는 개인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전자대리인에 의한 오류는 시스템의 오류에 해당하므로 (1)항 또는 (3)항이 적용된다.

셋째, UETA 제10조 (3)항 및 (4)항에서는 “(1)항과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오류는 착오의 법률을 포함한 기타 법률 및 있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효과를 가진다. 또한 (2)항과 (3)항은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3.8 송·수신시기와 장소

#### 3.8.1 송·수신시기

UETA 제15조 (a)항에서는 “송신시기와 관련하여,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22) UETA 제10조

23) 오병철, 전계논문.

한, 전자기록은 ① 수신자가 전자기록 또는 송신된 형태의 정보를 수신할 목적으로 지정하였거나 사용하고 있고, 수신자가 전자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적절히 전송되거나 달리 적절히 전달될 때, ②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 ③ 송신자외의 자 또는 송신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거나 또는 수신자에 의해 지정되거나 사용되고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영역에 입력될 때, 송신된”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기록의 송신요건과 그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관련 거래와 관련이 없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주소 또는 장소로 전자기록을 전달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주소로 전자기록이 전달되어야만 송신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수신자로 의도된 자는 그 수에는 관계가 없지만,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주소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또는 확인을 받아두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러한 합의를 재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전자기록은 송신자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수신자의 통제에 들어가게 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개개인의 수신자가 아닌 특정 시스템에 송신된 경우에는 송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UETA는 수신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UETA 제15조 (b)항 및 (e)항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전자기록은 ① 수신자가 전자기록이나 송신된 형태의 정보를 수신할 목적으로 지정하였거나 사용하고 있고, 수신자가 전자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될 때, ②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수신된다. 또한, 개인이 그 수신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자기록은 (b)항에 의하여 수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기록은 수신자에 대해서 지정 또는 사용되고 그 전자기록이 검색될 수 있는 시스템에 입력되고, 그러한 시스템에서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입력된 때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기록의 수신은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신자가 전자기록을 검색할 수 있음에도 서버에 남겨둔 채로 그 전자기록을 검색하지 않아 그 수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신이 인정된다.

둘째, UETA 제15조 (f)항에서는 “(b)항에서 규정된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전자확인의 수신은 기록이 수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그 자체가 송신된 내용이 수신된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확인의 수신은 수신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송신내용과 수신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아니다.

### 3.8.2 송·수신의 법적 효력의 결정

UETA 제15조 (g)항에서는 “어떤 자가 (a)항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b)항에 의하여 수신된 전자기록이 실제로 송신 또는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송신 또는 수신의 법적 효력을 기타 준거법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법에 의해 허용된 범위까지는 제외하고 이 항의 요건은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만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의도적으로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전자기록이 실제로 송신되지 않았거나 수신되지 않은 것을 어떤 당사자가 알았다면, 송·수신의 법적 효력은 다른 적용가능 법규에 의해 판단된다.<sup>24)</sup>

24) 손태우, 전개논문, p.14.

### 3.8.3 송·수신장소

UETA는 송·수신장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UETA 제15조 (d)항에서는 “전자기록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또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전자기록은 송신자의 영업소에서 송신되고 수신자의 영업소에서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즉, ①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2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영업소는 해당전자거래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며, ②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소는 송신자 또는 수신자의 거주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UETA는 당사자가 전자기록을 송·수신하는 경우 송·수신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송·수신장소에 대하여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정보처리시스템의 실제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영업소를 송·수신의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송·수신의 장소는 각각 송신자의 영업소와 수신자의 영업소이다. 영업소와 관련하여, 송신자나 수신자가 복수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거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를,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를 영업소로 본다.

둘째, UETA 제15조 (c)항에서는 “(b)항은 비록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전자기록이 (d)항에 의하여 수신된 것으로 보는 장소와 다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UETA는 정보처리시스템이 당사자간의 거래와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기록이 송·수신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실제 장소와 송·수신된 것으로 보는 장소가 다른 경

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9 공증과 확인

UETA 제11조에서는 “법에서 서명 또는 기록이 공증, 확인, 입증되거나, 또는 선서하에 작성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은 다른 준거법에 의하여 포함되도록 요구된 기타 모든 정보와 함께 그러한 행위를 이행하도록 수권된 자의 전자서명이 첨부되거나 서명 또는 기록과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조는 공증인 및 기타 수권된 자가 전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스템프, 날인 요건을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조는 공증 관련법의 다른 요건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며, 이 조의 모든 취지와 일치하여, 단지 전자매체로 서명이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sup>25)</sup>

### 3.10 자동화거래

자동화거래<sup>26)</sup>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sup>27)</sup>

첫째, UETA 제14조에서는 “계약은 개인이 전자대리인의 행위 또는 그 결과에 의한 조건과 합의를 알지 못하였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당사자의 전자대리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UETA 제14조 (2)항에서는 “계약은 개

25) UETA 제11조 Comment.

26) UETA 제2조 (2)호에서는 “자동화거래라 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있어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雙方의 행위나 기록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 전부나 일부를 전자적 수단이나 전자기록에 의하여 행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UETA 제14조.

인을 대신하거나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전자대리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성립될 수 있으며, 동 상호작용에는 개인이 이행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고 개인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을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전자대리인으로 하여금 거래 또는 이행을 완성하도록 하는 행위를 개인이 이행하는 상호작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UETA 제14조 (3)항에서는 “계약조건은 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UETA는 전자대리인(electronic agents)에 의해서 성립한 계약의 법률적인 유효성을 명료하게 인정하고 있다. 전자대리인은 비즈니스를 전자적인 형식으로 행하기 위하여 본인에 의해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자주적인 대리인이라고는 할 수 없더라도, 인간에 의한 직접의 개입없이,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이다. UETA의 제14조는 인간은 전자대리인을 사용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 즉 본인은 전자대리인이 체결하는 계약에 의해서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경우, 인간과 직접 대화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인터넷에서 구입한 자는 거래가 주문과 지불을 위한 정보를 요구하는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행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증된다.<sup>28)</sup>

### 3.11 양도가능한 기록

UETA는 양도가능한 기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UETA 제16조 (a)항에서는 “이 조에서, 양도가능한 기록은 ① 전자기록이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일상법전 제3편에 의한 어음 또는 통일상법전 제7편에 의한 서류, ② 전자기록의 발행인이 양도가능한 기록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의 전자기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UETA 제16조 (b)항에서는 “어떤 자는 양도가능한 기록에서의 이익의 양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된 시스템이 그러한 자를 양도가능한 기록이 발행되거나 양도된 자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능한 기록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UETA 제16조 (c)항에서는 “양도가능한 기록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성, 저장, 양도되는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은 (b)항을 충족시키고 어떤 자는 양도가능한 기록을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유일하고, 동일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4), (5) 및 (6)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는 양도가능한 기록의 단일의 정본이 존재하는 경우

② 양도가능한 기록이 발행된 자, 또는 정본에 양도가능한 기록이 양도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가능한 기록이 가장 최근에 양도된 자를 그러한 정본이 식별할 수 있는 경우

③ 정본은 그 관리를 주장하는 자 또는 그의 지정된 관리인에게 통신되고 그러한 자에 의해 유지될 것.

④ 확인된 정본의 양수인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사본 또는 수정본은 관리를 주장하는 자의

28) NCCUSL, A Few Facts about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http://www.nccusl/uniformact\\_factsheets/uniformacts-fs-ueta.asp](http://www.nccusl/uniformact_factsheets/uniformacts-fs-ueta.asp).

동의하에서만 이루질 수 있을 것

⑤ 정본의 각 사본과 사본의 사본은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

⑥ 정본의 어떤 수정본이 수권되거나 수권되지 않은 것으로서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

넷째, UETA 제16조 (d)항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가능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자는 통일상법전 제1-201(20)조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양도가능한 기록의 소지인이고 통일상법전 제3-392(a)조, 제7-501조 또는 제9-308조에 의한 적용가능한 제정법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소지인, 유통가능한 권리증권이 정히 유통된 소지인 또는 구매자의 각각의 권리와 항변을 포함하여 통일상법전에 의한 동등한 기록 또는 서면의 소지인으로서 동일한 권리와 항변을 가진다. 이전, 점유 및 배서는 이 항에 의한 어떤 권리를 획득하거나 행사하기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ETA 제16조 (e)항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가능한 기록하에서 채무자는 통일상법전에 의한 동등한 기록 또는 서면하에서 동등한 채무자로서 동일한 권리와 항변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UETA 제16조 (f)항에서는 “집행이 청구되고 있는 자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에는 양도가능한 서류를 집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양도가능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증명은 양도가능한 기록의 조건을 검토하고 양도가능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자의 신원을 증명하는데 충분한 양도 가능한 기록과 관련 거래기록의 정본에 대한 접근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가능한 기록은 두가지 점에서 제

한되고 있는데 우선 약속어음과 권리증권의 상응물에만 인정되고 수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 발행자의 합의를 요한다는 점이다.<sup>29)</sup> 즉, 양도가능한 기록은 약속어음과 권리증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표와 화환어음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왜냐하면 약속어음과 권리증권은 전자수표가 현재의 수표매입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3.12 정부부문의 전자기록

UETA의 3가지의 규정이 주정부기관이 작성하거나 보유하는 전자기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UETA 제17조에서는 주가 정부의 기록의 작성과 보유를 행할 장소로서, 하나의 기관 또는 직원을 지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제18조에서는 주가 어떤 기관 또는 직원이 주기관과 다른 자간의 전자기록의 전달 및 전자서명의 사용을 규제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제19조에서는 주가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사용에 관해서, 주기관간의 일관성과 상호운용 가능성을 촉진하는 표준을 설정하는 기관 또는 직권을 지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sup>30)</sup>

이러한 3가지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가 채용하면 되고,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주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의 전자상거래 조직화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규정이고, 통일주법전국위원회의는 모든 주에서 진심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sup>31)</sup>

29) 정경영,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에 관한 연구, 실시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실시법학회, 2000, p.272.

30) 新愚鶴, 前揭論文, p.10.

31) NCCUSL, A Few Facts about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http://www.nccusl/uniformact\\_factsheets/](http://www.nccusl/uniformact_factsheets/)

## IV.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이용증가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각국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이 진행되거나 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전자거래법(UETA)은 기본적으로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과 미국 통일상법전(UCC)의 관련 조항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입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UETA의 특징으로서는, 전자서류나 전자서명이 실거래의 대체관계에 있는 서면이나 수기서명과 많은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차법이며, 개념에 대한 정의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UETA는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을 “상거래(commerce)”에 비해 범위가 넓은 “거래(transaction)”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UETA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UETA는 전자적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한 당사자간의 거래에만 적용되며, 거래와 관련된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에만 적용된다. 둘째, UETA는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귀속과 그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UETA는 거래당사자간의 전자기록의 전송에서 발생하는 변경 또는 오류의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서류의 공증개념을 전자거래에 도입하여 공증과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UETA는 전자기록의 보존요건과 소송절차에서의 증거로서의 허용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째, 전자대리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자동화거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자기록의 송·수신시기 및 송·수신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섯째, 전자거래에서도 기존의 권리증권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양도가능성 및 강제가능성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양도가능한 기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미국의 통일상법전, 컴퓨터정보거래법, 연방전자서명법, 그리고 한국의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한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손태우,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최종안의 내용과 의의, 인터넷법률 3호, 2000.11.
- 오병철,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1999년 3월 19일 초안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8집, 국제거래법학회, 1999; <http://nongae.gsnu.ac.kr/~windoh/mywork/국제거래법학회발표논문.htm>.
- 정경영,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0.
- 정병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미국의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http://altair.chonnam.ac.kr/~bubdae/professor/book/jungbsl.htm>
- 한병완,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6권, 2001. 8.
- 新堀聰, 最新の美國における電子商取引關聯立法

の研究。

NCCUSL, A Few Facts about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http://www.nccusl/uniformact\\_factsheets/uniformacts-fs-ueta.asp](http://www.nccusl/uniformact_factsheets/uniformacts-fs-ueta.asp).

NCCUSL, A Few Facts about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http://www.nccusl/uniformact\\_factsheets/uniformacts-fs-ueta.asp](http://www.nccusl/uniformact_factsheets/uniformacts-fs-ueta.asp).

NCCUSL, Summary,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http://www.nccusl/uniformact\\_summaries/uniformacts-s-ueta.asp](http://www.nccusl/uniformact_summaries/uniformacts-s-ueta.asp).

[http://www.law.upenn.edu/bll/ulc\\_frame.htm](http://www.law.upenn.edu/bll/ulc_frame.htm).  
<http://www.nccusl.org>.

## A Study on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Soon-Hwan Jeon\*

### Abstract

In the face of this bewildering array of approaches to the problem, in 1997,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 undertook to produce a new uniform law that would bring some order and consistency to state legislation in this area. The NCCUSL drafting committee worked on a highly expedited drafting schedule, and a completed draft of UETA was finalized and approved in July 1999.15.

---

\* Dept. of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Joongbu University.